

해양수산부 공고 제2023-251호

## **2023년도 「해양수산 창업·투자 지원사업」 지원 대상 통합 모집 공고**

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수산 분야 창업 촉진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해 2023년도 「해양수산 창업·투자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통합 공고하오니, 관심 있는 해양수산 예비창업자, 창업기업, 중소·벤처기업 등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
2023년 02월 09일

해양수산부장관

# I. 사업 개요

## □ 사업 목적

- 해양수산 분야 우수기술을 보유한 (예비)창업자와 유망기업의 발굴 및 육성을 통해 해양신산업을 미래성장 동력산업으로 육성

## □ 지원 분야

- 「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법」 제12조(해양수산과학기술 분류체계 작성)에 따른 해양수산 소 기술 분야\* 지원

\* 해양자원, 해양환경, 해양수산생명, 해양관측 및 예보, 해양공학(해양플랜트, 선박공학, 레저·탐사장비), 해양재해/방재, 해안/항만물류, 해양안전/교통, 극지해양과학, 수산양식, 수산자원/어장환경, 어업생산/이용가공, 해양수산연구인프라

## □ 사업 내용

| 사업명                          | 프로그램                  | 지원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지원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접수기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페이지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해양<br>신산업<br>인큐<br>베이팅<br>지원 | ①해양수산<br>엑셀러레이터<br>운영 | 창업기획자(엑셀러레이터)를<br>통한 예비창업자와<br>초기 창업기업 발굴<br>및 집중 보육 실시 | (수행기관)<br>엑셀러레이터<br>(보육기업)<br>예비창업자 및<br>창업 7년 이내 기업 | 2/9(목)~<br>2/28(화)<br><br>별도<br>모집공고 | p3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창업기업<br>사업화 자금<br>지원 | 시제품 제작, 연구개발,<br>제품홍보 비용 등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창업 7년 이내 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/9(목)~<br>2/28(화)                   | p10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③해양수산<br>투자유치<br>활성화  | 투자유치 기회 제공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(법인)·벤처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별도<br>모집공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| p15 |
| 투자<br>희망기업<br>컨설팅<br>지원      | ④사업화<br>컨설팅 지원        | 마케팅·홍보, 판로개척<br>컨설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중소·벤처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/24(월)~<br>5/8(월)                   | p16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⑤투자유치<br>컨설팅 지원       | 투자실무, 자금조달<br>전략, 사업계획서 작성 등<br>IR 컨설팅                  | 중소(법인)·벤처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/24(월)~<br>5/8(월)                   | p20 |

\* 전담기관인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에서 별도 모집공고 예정

\*\* 1년 내 최대 2개 프로그램 수혜가능(단, 신청은 제한 없음)

\*\*\* 3년 내 최대 1회 동일 프로그램 수혜가능

(예시) '21년 사업화자금 수혜기업은 '23년 사업화자금 수혜불가

\*\*\*\* 단, 유망 기업에 대한 원활한 투자 유치 지원을 위해 투자 활성화 사업의  
경우 중복 지원 여부 별도 결정 가능

## II. 프로그램별 세부내용

### 1 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운영

#### □ 프로그램 목적

- 해양수산 분야에 특화된 액셀러레이터(수행기관) 운영 지원으로 유망 창업기업(보육기업) 발굴, 육성 및 투자유치 활동 전반을 지원

#### □ 프로그램 개요

- (지원 내용) 해양수산 전문 액셀러레이터 및 창업기업 지원
  - (액셀러레이터)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보육을 위한 운영 자금 지원

#### < 액셀러레이터 지원항목 >

- (인건비) 참여 인력 인건비 지원
- (운영비) 유망기업 모집·선발, 교육·훈련, 멘토링, 자금지원, 투자IR 등 운영비
- (역량강화비) 해양수산 관련 특화 교육, 네트워크 구축, 기관간 협업 등

- (창업기업) 초기자금, 교육·멘토링, 투자연계 등 창업 초기 안정화 및 성장을 위한 해양수산 전문 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지원

\* 자금지원 및 멘토링 등 지원내용은 기업별로 상이할 수 있음

#### < 창업기업 지원항목 >

- (자금지원) 기업별 초기 자금 지원
- (기업보육) 기업별 멘토링, 투자자매칭, 사업화 지원 등
- (투자유치) 액셀러레이터 직접투자 또는 연계투자 지원

#### ○ (지원규모)

- (액셀러레이터) 4개사, 기관별 2억 9천 5백만원 이내 지원
- (창업기업)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초기 기업 총 32개 내외

\* 액셀러레이터 지원 금액 및 지원 창업기업 수는 예산 범위 내에서 변동될 수 있음

## □ 프로그램 운영

- (엑셀러레이터 선발) 해양수산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발굴, 보육, 투자유치 지원을 수행할 **4개사 선발**(각 2.95억, 총 11.8억원 지원)
  - \* (선정 절차) 자격검토(KIMST) → 서류평가(평가위원회) → 발표평가(평가위원회)  
서류평가에서 2배수 선정, 단, 신청 건이 3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 가능
  - \*\* (가점) '23년 중기부 TIPS(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) 운영 사 해당 시 **가점 2점 부여**
  - \*\*\* (선정우대) '22년 최종평가 1순위 엑셀러레이터는 동 사업 신청 시, 별도 평가 없이 우선 선발
- (기업선발) 창업기획자가 해양수산 분야 유망 예비창업자 및 창업 7년 이내 기업 모집 및 선발

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(22.12.)에 따른 해양수산 신산업 5개 선도기술(붙임 참조) 중점 선발  
①친환경·첨단선박, ②스마트 블루 푸드, ③해양레저관광, ④해양바이오, ⑤해양에너지·자원

- (선발 규모) 총 32개 팀 이상(엑셀러레이터 당 8개 팀 이상, 그 중 예비 창업자 2개 팀 의무 선발, 창업 3년 이내 기업 2개 팀 이상 선발)
  - \* 평가 기준은 엑셀러레이터 내부 기준을 따르되, 최종선정은 전담기관 확정 필요
- (기업지원) 창업기업 진단을 통해 고용, 투자유치 등 기업별 성과지표(KPI)를 설정하고, 이를 달성하기 위한 보육 프로그램 설계 및 운영
  - (자금 지원) 엑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과 협약체결 후, 90일 이내에 창업기업에 **사업비의 25%(75백만원)을 초기 자금\***으로 지급(직접·지분·연계투자과 별도)
    - \* 초기 자금은 창업기업 별 차등 지급 가능하며(단, 지급액 상한 15백만원), 엑셀러레이터는 창업기업의 집행 적절성을 사용기준에 따라 관리·감독하여야 함
  - (기업보육) 교육·멘토링, 시장검증, 판로지원 등 해양수산 신산업 분야 특화 보육프로그램 운영과 기업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
    - \* 보육대상 기업 중 해외진출·수출 희망 기업이 있을 경우 글로벌 진출 지원을 위한 특화프로그램 운영 가능(단, 별도의 추가적인 예산 교부는 없음)
  - (직접투자) 엑셀러레이터 자체자금으로 선발기업에게 직접 투자
    - \* 엑셀러레이터별 총 60백만원 이상을 선발기업에 **의무적으로 투자**(미이행 시 해당 금액을 사업비에서 환수)
  - (투자연계) IR 컨설팅, 투자기관 연계 등을 통한 투자유치 지원
    - \* 보육기업 투자유치 지원을 위해 엑셀러레이터 별 데모데이 1회, 통합 데모데이 1회 개최

- (사후관리) 보육기업 사후관리 방안 수립 및 지원, 사업 종료 후 2년 간 사업성과 모니터링 실시 및 요구자료 제출

\* 보육기업 사후관리 후, 차년도 상반기에 전담기관에게 결과를 보고함

\*\* 수행기관은 협약종료 후 2년간 사업성과 기초자료 제출에 협조할 의무가 있음

#### ○ (공동협업) 전담기관이 추진하는 프로그램 참여 및 지원

- 창업 관련 행사(창업설명회·상담회, 간담회 등) 지원, 투자유망 기업 발굴 지원, 상·하반기 해양수산 투자심사역 양성교육 필수 참여 및 이수\* 등

\* 수행기관별 상하반기 최소 3명 이상의 인력(사업 참여인력 중) 교육이수 필수

#### ○ (사업수행 실적보고) 전담기관 요청에 따라 월 1회 이상 프로그램 수행내용 및 실적 보고

\* 점검회의 개최 시, 수행책임자 및 실무담당자 참석 원칙

#### ○ (최종평가) 수행기관 성과목표 달성도, 기업보육 내용, 기업별 성과 목표 달성도, 전담기관 간의 소통·협업능력 등을 평가

- 평가결과 1순위 액셀러레이터는 차년도 동 사업 신청 시, 평가과정을 거치지 않고 우선 선발

\* 최종평가는 수행책임자가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, 최종평가 결과가 60점 미만일 경우, 심의를 통해 사업비 잔액 미지급 및 환수조치를 할 수 있음

### □ 수행기관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#### ○ (신청자격) 해양수산 분야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기업을 전문 육성할 수 있는 아래 조건을 만족하는 국내법인

- ①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액셀러레이터
- ② 대한민국 국적자가 액셀러레이터 (공동)대표여야 함
- ③ 상근 전담인력 최소 2인 이상 확보\* (수행책임자 및 실무담당자로 지정)
  - 수행책임자는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총괄 및 운영 경력 3년 이상 필수
  - 실무담당자는 액셀러레이팅 실무경력 3년 이상으로 사업참여율 50% 이상 필수
  - 타 사업 등으로 본 사업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, 사업 수행 및 전담기관 간 협조 등이 원활하지 않을 시, 전담기관은 수행책임자 또는 실무담당자 등 참여인력 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
- ④ 자체 보육프로그램 및 관련 시설을 보유하고 있고 10개 이상 창업기업 투자 경험 필수
- ⑤ 해양수산분야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국내·외 해양수산 유관 기관, 전문 VC, 협력기관 등과 긴밀한 네트워크 보유
- ⑥ 실무경험을 보유한 벤처창업 관련 전문가, 투자자 등의 멘토단 구성 필요

- (제외대상)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 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 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  - \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  -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## □ 신청 방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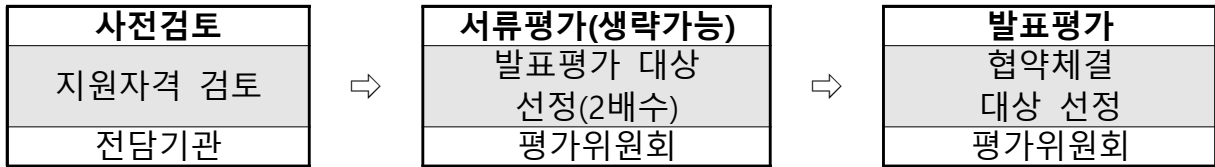
- (신청기간) 2023. 2. 9.(목) ~ 2. 28.(화) 17:00까지
- (신청방법)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<https://www.kimst.re.kr/startup>) 공고·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  - \* **접수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7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**
  - \*\*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할 것을 권고함
- (신청서류) 별첨1 참조

| 연번 | 신청 서류(필수 제출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①  | 지원신청서(별첨 1 참조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작성 후 제출 |
| ②  | 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증빙서류    |
| ③  | 엑셀러레이터 등록 확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④  | 국세 및 지방세 완납 증명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⑤  | 재무제표 (최근 3년, '20~'22년)<br>*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'22년 재무제표 제출 |         |
| ⑥  |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⑦  | 대표자 및 참여인력 이력 증빙서류(학위, 경력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| ⑧  | 투자 실적 증빙자료(계약서 사본, 이체내역서, 주주명부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

※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될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
## □ 액셀러레이터 선정 절차 및 기준

- (선정절차) 사전검토, 서류, 발표평가를 통해 수행기관 선정



\* 신청 건이 선정 대상의 3배수 이하일 경우 서류평가 생략가능

\*\* 평가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, 동점 발생 시 수행기관 역량 점수가 높은 기관 우선 선정(단,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)

- (평가기준) 사업 목적 및 신산업분야 이해도, 프로그램 구성 등을 평가

\* 기업모집은 해양수산창업투자시스템을 통해 수행기관별로 별도 공고할 예정(3~4월)

| 평가항목 |             | 세부 평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(점) |
|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서류평가 | 수행기관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재무상태 안정성 및 인력구성 적절성</li> <li>액셀러레이팅 실적 및 보육공간·네트워크 우수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5    |
|      | 프로그램 수행계획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유망기업 모집·발굴·선정 계획의 구체성</li> <li>해양수산 신산업분야 창업기업 발굴 계획</li> <li>액셀러레이터 성과지표의 타당성, 적합성, 현실성</li> <li>보육 프로그램 운영 계획 및 일정의 타당성, 적합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0    |
|      | 역량강화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양수산 신산업분야 이해도 및 전문성 제고 방안의 타당성</li> <li>해양수산 액셀러레이터 역량강화 계획의 구체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5    |
|      | 합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|
| 평가항목 |             | 세부 평가기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배점(점) |
| 발표평가 | 수행기관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조직/참여인력(보유자격) 구성 등 조직·인력구성 적절성</li> <li>보육·투자 실적 등 액셀러레이터 수행 성과 우수성</li> <li>보유 인프라 및 전문가·멘토 명단 구성의 전문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    |
|      | 발굴 및 선정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해양수산 신산업분야 중심의 예비창업자·창업기업 홍보·발굴 계획의 구체성 및 적합성</li> <li>보육대상 기업 선정 계획의 적합성 및 공정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0    |
|      | 프로그램 수행계획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액셀러레이터 성과지표의 도전성, 적합성</li> <li>보육 기업 수, 초기투자 및 후속투자 관련 지표 등 평가</li> <li>액셀러레이터 프로그램 구성의 독창성 및 우수성</li> <li>창업기업 교육·멘토링 계획의 구체성 및 기업 만족도 제고방안의 타당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    |
|      | 성과관리 및 일반관리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성과관리 계획(후속 투자유치 계획 포함)의 적정성</li> <li>초기투자 계획 및 후속투자 연계 계획을 중점적으로 평가</li> <li>일정, 산출물, 재무, 참여인력 등 일반 관리 분야</li> <li>공간, 초기자금 매칭, 전체 사업비 구성 및 운영 적정성</li> <li>사후관리 및 향후 연계 계획의 타당성</li> </ul> | 20    |
|      | 합계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0   |

- (가점사항) '23년 중기부 TIPS(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) 운영사가 액셀러레이터 수행기관으로 지원하는 경우 서류평가 가점 2점 부여

## □ 추진절차

| 절 차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 정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<div>엑셀러레이터<br/>모집공고 및 선정</div> <div>↓</div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엑셀러레이터 선정</li> <li>- 서류평가(2배수 이내 선정), 발표평가를 통한 엑셀러레이터 최종 선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~3월   |
| <div>기업 모집공고<br/>및 선정</div> <div>↓</div>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엑셀러레이터별 예비창업자 및 창업기업 모집 및 선정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~5월   |
| <div>프로그램 운영</div> <div>↓</div>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맞춤형 보육프로그램 운영</li> <li>• 창업설명회 개최(1회 이상)</li> <li>• 월별 사업수행 내용 및 실적 점검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~10월  |
| <div>데모데이</div> <div>↓</div>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보육기업 IR 및 투자검토 등 투자활동 지원</li> <li>• 엑셀러레이터 별 데모데이 및 통합 데모데이</li> <li>• 엑셀러레이터, 보육기업, 전담기관 및 외부 전문가 간 교류의 장 마련</li> </ul> | 10~11월 |
| <div>최종평가</div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사업 최종평가 실시</li> <li>- 프로그램 운영 결과 및 주요 성과보고</li> <li>* 평가결과 1순위 엑셀러레이터 차년도 우선 선발 적용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2월    |

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협약서 기재사항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전담기관은 수행기관의 횡령,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창업기업 모집 및 선발은 수행기관(엑셀러레이터) 내부기준에 따르되, 평가계획과 선정결과를 전담기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, 전담기관과 협의 후 최종 확정하여야 함
- 수행기관은 초기자금지원(사업비)과는 별도로 보육기업에게 총 60백만원 이상의 투자를 완료해야 하며, 투자 의무금액 미달성 금액만큼 정부출연금을 환수 조치함

- 초기자금지원금(사업비 25%, 총 7천5백만원)을 미지원하거나, 지원받은 기업의 중도 포기 발생 시, 해당 금액을 불인정되며, 최종 사업지원금에서 환수 조치함
  - \* 단, 중도 포기로 인한 기업 추가 선정 시 해당 기업에 한하여 협약 종료 20일 전까지 집행 가능
- 선발된 예비창업자가 이미 사업자등록(혹은 법인설립)을 했거나, 창업기업(또는 예비창업자)이 타인의 아이템 또는 기술을 모방하거나 도용한 경우 선정이 취소되며,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은 스타트업 및 해당 수행기관에 있음
- 선발 후, 중도 포기 기업이나 선정이 취소된 기업이 발생할 경우, 수행기관은 전담기관에게 이를 즉시 보고하고, 전담기관의 요청에 따라 보육 대상을 충원하여야 함

#### □ 문의처

| 소속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     | 연락처          | 이메일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|
|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<br>창업투자팀 | 김영진<br>연구원 | 02-3460-0374 | kimbear@kimst.re.kr |

## 2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

### □ 프로그램 목적

- 창업기업의 실질적인 판매 촉진 효과 도모를 위한 수출지원, 시제품 제작, 상품화·홍보 등 수요기업 맞춤형 사업화 자금 지원

### □ 프로그램 내용

- (지원 대상) 해양수산 분야 창업 7년 이내 기업
- (지원 규모) 총 30개사\* 내외, 총 9억원(기업당 최대 3천만원)

\* 수출기업 집중지원 3개社 이상 선발

\*\* 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」, 「예비 오션스타」 선정 기업 우선 배정(15개社 내외)

\*\*\* 사업비는 정부지원금 100%로 구성되며, 창업기업 대응자금은 (정부지원금10% 이상 현금 부담) 면제 유지

해양수산 신산업 육성전략(22.12.)에 따른 해양수산 신산업 5개 선도기술(붙임 참조) 중점 선발  
①친환경·첨단선박, ②스마트 블루 푸드, ③해양레저관광, ④해양바이오, ⑤해양에너지·자원

- (지원내용) 시제품 제작, 연구개발, 제품 검증, 제품·서비스 및 기업 홍보, 수출 등에 소요되는 자금 지원

#### <일반>

| 구 분    | 지원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시제품 제작 | ◦ 재료비, 장비구매 및 시설대여, 위탁 제작 등 |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<br>*선정 후 안내 |
| 연구개발   | ◦ 시장조사, 기술개발 등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품 검증  | ◦ 시험·분석, 상표·특허 획득, 인증 등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기업 홍보  | ◦ 카탈로그, 동영상, 홈페이지 제작 등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박람회 참가 | ◦ 국내 전시회 참가비, 부스 임차비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### <수출>

| 구 분      | 지원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해외홍보     | ◦ 해외 전시회 참가비, 부스 임차비 등(여비 불가) |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사용<br>*선정 후 안내 |
| 바이어 발굴   | ◦ 바이어 매칭, 관련 컨설팅 등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수출사업화 지원 | ◦ 관세, 물류지원, 포장지원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○ (성과목표) 업력별 성과 목표 제시 필요

- (초기기업) 시제품 제작, 인증 등 사업비 지원 항목에 따른 목표 제시

\* 필요 시 매출액 및 고용창출 목표 제시

- (성장기업) 매출액 및 고용창출 목표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며, 사업비 지원 항목에 따른 목표는 선택적 제시

- (수출기업) 정부지원금 이상 수출액 목표를 필수로 제시하여야 하며, 초과달성 시 우수과제로 선정(3개사 이내)

□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○ (신청자격) 해양수산 분야 7년 이내 창업기업

\* 접수 마감일 기준, 창업 후 7년 이내 기업(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,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설립연월일 기준)

\*\* 업력 기준으로 초기기업(4년 미만) 및 성장기업(4년 이상~7년이하)으로 구분

\*\*\* 수출기업은 창업 성장기업으로 직전년도 수출액 5천만원 이상 기업 대상

○ (제외대상)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
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
\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
- 창업 성장기업의 경우,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

- 신청기업, 대표이사 또는 수행책임자가 접수마감일 현재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

## □ 신청 방법

- (신청기간) 2023. 2. 9.(목) ~ 2. 28.(화) 17:00까지
- (신청방법)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<https://www.kimst.re.kr/startup>) 공고·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  - \* **접수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7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**
  - \*\*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권고
- (신청서류) 별첨2 참조

| 연번 | 신청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|
| ①  | 창업기업 사업화 자금 지원 신청서(직인 날인 필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제출         |
| ②  | 사업자등록증 사본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제출         |
| ③  | 최근년도('21~'22년) 결산 재무제표(성장기업, 수출기업에 한함)<br>*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22년 재무제표 제출 | 필수 제출         |
| ④  | 직전년도('22년) 수출실적증명서(한국무역통계진흥원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수출기업<br>필수 제출 |
| ⑤  | 신청기술 관련 지식재산권, 인증 서류 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시 제출       |

- ※ 제출자료는 신청기업 선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
- ※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될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- ※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며,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의 경우 필요 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## □ 지원대상 선정

- 사전검토, 서면평가 및 발표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
  - (사전검토) 신청서류 검토를 통한 자격요건 확인
    - \* ①접수 후 신청서류 여부확인 ②서면평가 후 세부자격요건, 제외대상 검토
    - \*\* ①신청서류 미제출, ②자격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신청제외 대상인 경우 탈락 조치하며, 후순위 기업 선정함(기타 특이사항은 발표평가 시 평가위원에게 제공)
  - (서면평가) 사업계획서 평가를 통한 발표평가 대상기업(1.5배수) 선정
    - \* 지원 대상기업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서면평가는 생략할 수 있음
  - (발표평가) 사업계획서 발표 및 질의응답을 통한 기업별 점수 산정

### <서면/발표평가 운영>

- 평가위원회 위원은 5인 내외 외부 전문가로 구성
- 평가 점수 상위순위에 의해 선정하되 동점 발생 시 업력이 낮은 기업 우선 선정 (단, 60점 미만 업체는 선정에서 제외)
- 평가항목 및 배점

| 평가항목          | 세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점수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기업 역량 및 추진의지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경영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 등)</li> <li>■ 국내·외 동향파악 수준, 사전 기획을 위한 노력 등</li> <li>* (수출기업의 경우) 글로벌 관계자 대상으로 소통, 홍보 등 진행 가능한 자료 등의 준비 완성도</li> </ul> | 20점 |
| 사업화 대상기술의 우수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사업화 대상기술 및 제품의 권리성 및 파급성</li> <li>■ 기존 기술과의 차별성 및 독창성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점 |
| 시장성 및 사업성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목표시장 규모, 성장가능성 및 시장점유현황</li> <li>■ 추진목표의 명확성 및 실현가능성</li> <li>* (수출기업의 경우) 수출국가, 전시회/전시시장의 특성과 아이템과의 적합도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| 40점 |
| 사업비 구성        | ■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점 |

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# □ 추진절차

| 절 차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 정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사업 공고 및 접수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프로그램 내용, 지원 대상, 신청방법 등 모집 공고 및 접수 실시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월    |
| ↓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지원기업 선정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지원기업 선정</li> <li>- 사전검토, 서면 및 발표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기업 선정</li> <li>* 2배수 미만 접수 시 서면평가 생략 가능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월    |
| ↓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</li> <li>- 협약체결(전담기관↔수혜기업) 및 수행간담회</li> <li>- 사업계획서에 맞춰 사업수행(수혜기업)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~11월 |
| ↓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중간모니터링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진행사항 파악 및 선정기업 애로사항 청취</li> <li>- 사업 수행 진도점검 및 외부 전문가 자문</li> </ul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8~10월 |
| ↓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최종평가   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결과보고서 제출 및 최종평가 실시</li> <li>- 결과보고서 및 성과 증빙자료 제출(11월)</li> <li>- 최종평가 및 보완 의견 제시</li> <li>* 평가 의견에 따른 보완 후 추가 제출</li> </ul> | 12월   |

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선정 취소, 제재조치 및 정부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
- 전담기관은 지원기업의 사업비 횡령, 편취 등 용도 이외 사업비 집행 시 환수조치 및 채권추심 등의 행정행위를 취할 수 있음
- 정부지원금은 협약 체결 후 전액 선지급
  - ※ 사업비는 사업비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고 집행 완료한 건에 대해 증빙 서류를 갖추어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<https://www.kimst.re.kr/startup>)에 등록
- 해당 프로그램은 일반(국내 사업화)/수출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, 사업 신청서 접수 시, 택 1(변경 불가)
- 일반/수출 분야별 해당 지원 항목에 한하여 자금 집행 가능

## □ 우대사항

- 우대항목에 따라 15개사 내외 우선배정

| 우선배정 규모 | 우대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15개사 내외 | ○ 해양수산 분야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」선정기업 |
|         | ○ 「예비 오션스타」선정기업                |

※ 일반분야에 한하여 우대사항 적용하며, 수출기업 분야의 경우 우대사항 적용 없음

## □ 가점사항

- 가점항목에 따라 발표평가 가점 부여(합산하여 최대 6점 이내)

| 가점 규모       | 가점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점<br>최대 2점 | ○ '22년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우수성과 기업        | 합산하여<br>최대 6점<br>이내 부여 |
|             | ○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○ '22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○ '22년 해양수산 창업기업 ESG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2점<br>최대 4점 | ○ 「예비 오션스타」선정('21~'22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○ 해양수산 분야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」선정('21~'22) |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문의처

| 소속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 | 연락처          | 이메일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<br>산업정책실 창업투자팀 | 김설아 팀장 | 02-3460-0371 | ksa519@kimst.re.kr |

### □ 프로그램 목적

- 해양수산 산업 및 기업에 대한 투자자의 이해와 관심도를 제고하고, 유망기업 발굴 및 투자유치 기회 제공 등을 통해 투자 성과 창출
- \*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운영, 팸투어 실시, 투자심사역 양성 추진

### □ 프로그램 내용

- (기업 IR) 해양·수산업 펀드 운용사 등 해양수산 분야 투자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투자기관 협의회 회원사 대상으로 기업 IR 기회 제공
- (팸투어) 투자자가 기업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제품, 사업장 규모, 제조설비, 보유인력 등을 파악하는 현장 방문형 투자검토

### □ 신청자격 및 신청기간

- (신청자격)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분야 중소(법인)·벤처기업
- (신청기간)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을 통해 별도 공고

### □ 지원대상 선정

- (기업 IR) 투자가능성, IR 준비도 등을 고려한 기업선정
- (팸투어) 기술성, 사업성, 현장방문 적합성 등 고려한 기업선정

### □ 문의처

| 소속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  | 연락처          | 이메일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<br>산업정책실 창업투자팀 | 지연선 연구원 | 02-3460-0375 | jyssss@kimst.re.kr |

## □ 프로그램 목적

- 해양수산 중소·벤처기업의 홍보 및 마케팅, 판로개척 컨설팅 지원 등을 통한 사업화 역량 강화 및 기업 자생력 제고

## □ 프로그램 내용

- (지원규모) 15개사 내외(글로벌 진출 지원 기업 3개사 포함)
- (지원내용) 국내·외 홍보·마케팅 또는 판로개척 형식 컨설팅 제공

| 구 분           | 컨설팅 지원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              | 국내 사업화 컨설팅 지원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글로벌 사업화 컨설팅 지원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홍보·마케팅<br>컨설팅 | ① 브랜드/홍보/마케팅 전략 수립<br>② 홍보물(브로슈어, 카달로그, 리플렛, 영상물 등) 기획 및 제작 지원<br>③ 온라인 마케팅(SNS, 웹페이지 제작, 배너 광고, 온라인 홍보기사 등) 컨설팅<br>④ 디자인·브랜드(BI/CI 등) 개발 컨설팅<br>⑤ 포장재 기획 및 제작 지원<br>⑥ 기타 | ① 브랜드/홍보/마케팅 전략 수립(글로벌/국가별)<br>② 글로벌 홍보물 기획 및 제작(브로슈어, 카달로그, 리플렛, 영상물 등) 지원<br>③ 지적재산권(국제상표, 특허 등) 출원 지원<br>④ 해외 온/오프라인 마케팅(SNS, 웹페이지 제작, 배너광고, 온라인 홍보기사 등) 컨설팅<br>⑤ 수출 관련 컨설팅(수출검사, 서류대행 등)<br>⑥ 수출용 포장패키지 기획 및 제작 지원<br>⑦ 기타 |
| 판로개척<br>컨설팅   | ① 시장조사 및 분석<br>② 공공판로<br>③ 유통채널<br>④ B2C, B2B 판매전략<br>⑤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(MOU체결 등)<br>⑥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① 해외 POC(시장조사 및 분석, 글로벌마켓 테스트 등)<br>② 권역별 해외 바이어 발굴<br>③ 해외수출유통채널(글로벌 플랫폼 입점 등)<br>④ 해외 인·허가/인증(ESG, 비건 인증 등)<br>⑤ 해외 네트워크 구축 및 활용(MOU체결 등)<br>⑥ 해외박람회·전시 기획 및 참여<br>⑦ 기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※ 홍보·마케팅, 판로개척 분야 컨설팅 주제를 세분화하여 컨설팅 내구성 강화

※ 컨설팅 지원 항목은 기업별로 상이하며, 진단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※ 국내 사업화 컨설팅/글로벌 진출 사업화 컨설팅으로 구분되며 중복 신청 가능하나, 기업 진단 결과 및 기업의 우선순위 등에 따라 최종 택 1

## □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- (신청자격) 해양수산 분야 중소·벤처기업
  - (제외대상)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  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   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    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    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- \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
## □ 신청 방법

- (신청기간) 2023. 4. 24.(월) ~ 5. 8.(월), 17:00
  - (신청방법)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<https://www.kimst.re.kr/startup>) 공고·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- \* **접수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7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**
- \*\*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할 것을 권고
- (신청서류) 별첨3 참조

| 연번 | 신청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①  | 사업화 컨설팅 지원 신청서(직인 날인 필수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제출   |
| ②  | 사업자등록증 사본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제출   |
| ③  | 제품·서비스 소개서(자유양식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제출   |
| ④  | 중소기업확인서, (해당 시)벤처기업확인서 각 1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필수 제출   |
| ⑤  | 수출관련 실적 및 증빙서류(글로벌 사업화컨설팅 프로그램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해당 시 제출 |
| ⑥  | 최근년도(22년) 결산 재무제표(성장기업, 수출기업에 한함)<br>*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 증명원 우선 제출 후 22년 재무제표 제출 | 선정 시 제출 |

- ※ 제출자료는 신청기업 선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
- ※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- ※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며,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의 경우 필요 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## □ 지원대상 선정

○ 서류검토, 현장진단 및 선정(서면)평가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

- (서류검토) 필수 제출 서류 누락, 자격요건 등 확인

- (현장진단) 컨설팅 목적, 추진의지, 역량, 기대효과 등 진단

\* 현장진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시(선정평가 시, 진단결과 제공)

| 대상   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점수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지원기업 | ■ 경영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 등) 및 참여의지 | 30점 |
|      | ■ 시장성 및 사업성(시장규모, 성장성, 사업전략 타당성) | 30점 |
|      | ■ 사업화 컨설팅 지원 사업을 통한 기대 효과        | 40점 |

- (선정평가) 경영역량 및 참여의지, 시장성·사업성 등 종합평가

## □ 추진절차

| 절 차        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 정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
|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       | • 사업 수행기관 모집, 선정평가 및 계약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~4월  |
| ↓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사업 공고 및 접수          | • 프로그램 내용, 지원 대상, 신청방법 등 모집 공고 및 접수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~5월  |
| ↓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지원기업 선정             | • 사전검토, 기업진단(현장), 선정(서면)평가를 통한 수혜기업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월    |
| ↓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컨설팅 기관 매칭 및 수행계획 수립 | • 기업별 컨설팅기관 매칭 및 기업 진단을 통한 컨설팅 수행계획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월    |
| ↓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컨설팅 실시              | • 지원기업별 컨설팅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~11월 |
| ↓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|
| 성과보고                | • 컨설팅 수행성과 보고<br>- 수혜기업별 컨설팅 결과 보고 및 성과취합<br>* 컨설팅관리기관, 컨설팅기관 등 참석 | 12월   |

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유의사항

○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사업 신청, 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

## □ 가점사항

○ 가점항목에 따라 선정(서면)평가 가점 부여

| 가점 규모       | 가점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점<br>최대 2점 | ◦ '22년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우수성과 기업         | 합산하여<br>최대 6점<br>이내 부여 |
|             | ◦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◦ '22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◦ '22년 해양수산 창업기업 ESG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2점<br>최대 4점 | ◦ 「예비 오션스타」 선정('21~'22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◦ 해양수산 분야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」 선정('21~'22) |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우대사항

○ 우대항목에 따라 5개사 우대 선정

| 우대 규모 | 우대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총 5개사 | ◦ '22년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최종평가 우수기업 |
|       | ◦ '21년 사업화 R&D 지원사업 최종평가 우수기업    |

## □ 문의처

| 소속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  | 연락처          | 이메일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<br>산업정책실 창업투자팀 | 지연선 연구원 | 02-3460-0375 | jyssss@kimst.re.kr |

### □ 프로그램 목적

- 해양수산 중소·벤처기업의 경영, 재무, 투자유치 역량강화 및 실질적인 투자유치 기회 제공을 통한 자금조달 지원

### □ 프로그램 내용

- (지원 대상) 투자유치를 희망하는 해양수산 중소(법인)·벤처기업
- (지원 규모) 총 12개 기업
- (지원 내용) 기업진단, 투자유치 기본교육 실시, 자금조달 설계, 재무 분석, IR자료 작성 컨설팅, 투자사 매칭 및 IR 실시 지원 등

#### < 지원 항목 >

##### ○ 투자유치 컨설팅

- (기본교육) 투자의 이해, 투자 실무, 기업 성장단계별 자금조달 전략 등
- (기업진단) 기업현황, 사업계획, 성장로드맵, 투자 가능성 등 종합 진단
- (맞춤형 IR전략) 투자 컨설팅 모듈에 따라 진행(사업화전략, 재무분석 및 전략, 자금조달설계, 재무추정 및 기업가치평가, 사업계획서 및 IR자료 작성 등)
- (투자자 발굴·매칭 및 IR) 벤처투자자 대상 IR 및 피드백, 국내외 잠재 투자 기관 개별 접촉 및 투자 상담 매칭
- (사후관리) 투자자 상담결과 안내, 투자계약 지원

※ 컨설팅 지원항목은 기업별로 상이하며, 진단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

### □ 신청자격 및 제외대상

- (신청자격) 해양수산 분야 중소(법인)·벤처기업
- (제외대상) 접수 마감일까지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  - 기업의 부도, 휴·폐업 중인 경우
  -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,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

- 「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4조에 따라 허가 받은 신용정보회사에서 기업채무 불이행 등 비정상 또는 불량 거래처로 확인된 경우
- 파산·회생절차·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
  - \* 단,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/변제 계획에 따라 채무변제를 정상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

## □ 신청 방법

- (신청기간) 2023. 4. 24.(월) ~ 5. 8.(월), 17:00
- (신청방법) 해양수산창업투자정보시스템(<https://www.kimst.re.kr/startup>) 공고·신청 메뉴를 통해 신청서류 전산 접수
  - \* **접수마감일 17시 이후에는 온라인망이 자동 차단되어 접속 중이라 하더라도 추가 입력이 불가하므로 접수마감일 17시 이전에 신청 서류 전산등록이 완료되어야 함**
  - \*\* 접수마감일에는 접속자 증가로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할 것을 권고
- (신청서류) 별첨4 참조

| 연번 | 신청 서류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|
|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
| ①  | 투자유치 컨설팅 신청서(직인 날인 필수)        | 필수 제출   |
| ②  | 사업자등록증 사본(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포함)  | 필수 제출   |
| ③  | 기업 사업계획서 또는 제품·서비스 소개서 (자유양식) | 필수 제출   |
| ④  | 중소기업확인서, (해당 시)벤처기업확인서 각 1부   | 필수 제출   |
| ⑤  | 투자실적 및 증빙자료(계약서 등)            | 해당 시 제출 |

- ※ 제출자료는 신청기업 선발 기준이 되는 자료이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
- ※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담기관에서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, 허위 발각 시, 사업 선정 취소 및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음(제출한 자료는 일괄 반납되지 않음)
- ※ 한국기업데이터를 통해 기업 신용정보를 조회하며, 조회가 안 되는 기업의 경우 필요 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제출을 추가 요청할 수 있음

## □ 지원대상 선정

- 서류검토, 선정평가(서면)를 통한 지원기업 선정
  - (서류검토) 필수 제출 서류 누락, 자격요건 등 확인
  - (현장진단) 컨설팅 목적, 추진의지, 역량, 기대효과 등 진단
    - \* 현장진단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으로 실시(선정평가 시, 진단결과 제공)

- (선정평가) 경영진 역량 및 참여의지, 기술(제품)의 우수성 및 시장성, 사업성, 투자가능성 등 종합평가

| 대상   | 평가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점수  |
|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지원기업 | ■ 경영진 역량(재무상태, 조직구성, 전문성 등) 및 참여의지                         | 20점 |
|      | ■ 기술성(기술(제품)의 독창성, 개발단계 및 사업화정도 등)                         | 30점 |
|      | ■ 시장성 및 사업성(시장규모, 성장성, 사업전략 타당성)<br>■ 투자가능성 및 투자대비 회수가능성 등 | 50점 |

## □ 추진절차

| 절 차                 |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일 정    |
|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|
| 수행기관 모집 및 선정        | • 사업 수행기관 모집, 선정평가 및 계약체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2~4월   |
| ↓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사업 공고 및 접수          | • 프로그램 내용, 지원 대상, 신청방법 등 모집 공고 및 접수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4~5월   |
| ↓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지원기업 선정             | • 사전검토, 기업진단(현장), 선정(서면)평가를 통한 수혜기업 선정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월     |
| ↓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컨설팅 기관 매칭 및 수행계획 수립 | • 기업별 컨설팅기관 매칭 및 기업 진단을 통한 컨설팅 수행계획수립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월     |
| ↓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컨설팅 실시              | • 지원기업별 컨설팅 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5~11월  |
| ↓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IR 실시               | • 컨설팅 기업 대상 IR실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10~11월 |
| ↓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|
| 성과보고                | • 컨설팅 수행성과 보고<br>- 수혜기업별 컨설팅 결과 보고 및 성과취합<br>* 컨설팅관리기관, 컨설팅기관 등 참석 | 12월    |

※ 일정 및 세부내용은 프로그램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## □ 유의사항

- 동 프로그램에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에 위배되거나,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또는 누락이 확인된 경우, 사업 신청, 지원 취소 및 제재조치 등을 받을 수 있음

## □ 가점사항

- 가점항목에 따라 선정(서면)평가 가점 부여

| 가점 규모       | 가점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비고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|
| 1점<br>최대 2점 | ◦ '22년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우수성과 기업         | 합산하여<br>최대 6점<br>이내 부여 |
|             | ◦ 해양수산 신기술 인증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◦ '22년 해양수산 창업 콘테스트 입상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◦ '22년 해양수산 창업기업 ESG 우수사례 경진대회 입상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2점<br>최대 4점 | ◦ 「예비 오션스타」 선정('21~'22)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|
|             | ◦ 해양수산 분야「혁신기업 국가대표 1,000」 선정('21~'22) |                        |

## □ 우대사항

- 우대항목에 따라 5개사 우대 선정

| 우대 규모 | 우대 항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총 5개사 | ◦ '22년 창업기업 사업화자금 지원사업 최종평가 우수기업 |
|       | ◦ '21년 사업화 R&D 지원사업 최종평가 우수기업    |

## □ 문의처

| 소속       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    | 연락처          | 이메일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<br>산업정책실 창업투자팀 | 지연선 연구원 | 02-3460-0375 | jyssss@kimst.re.kr |